

나. 작성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
- 2) 감사직후 각 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전문 위원에게 세출
-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세출
-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재택 의결 후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송부
- 5) 본회의 회부 및 의결
- 6) 작성요령

- 요구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8. 1. 1~10. 31 기준으로 작성
- '97회 계년도 결산자료는 '97. 1. 1~12. 31을 기준으로 작성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세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97.12.13)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98.2.24)이 새로 세정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 가. 제1조(목적)에 구성·운영의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를 초·중등 교육법 제34조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2조로 하였고
- 나.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범위) 중 세1항에는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에서 규정한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제2항중 학생수 60명 미만에 두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7인~15인) 및 위원의 구성비율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중 세1항 세3호는 세5조(위원의 자격)의 규정

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는 사항은 이미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없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라. 제9조(심의사항)은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10가지)이외의 사항만을 심의사항으로 하여
 - 학교규정의 제·개정,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 제18조(간사)에 관한 사항중

당연직 간사인 '서무책임자'를 '행정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으로 하였으며

- 바. 삭제되는 조항은 '재심의'에 관한 조항으로
 -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제2항,
 -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제3항입니다.
- 삭제하는 이유는
 -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3항이 개정령에서 삭제되었고
 - 그 대신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가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 "재심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